



'10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문제 - 일반(남·여)·101경비단·경찰행정학과 특채 -

** 평가: 아주 쉽게 출제됨, 최신판례의 약진
 * 이론 2문제, 조문 3문제, 판례 15문제
 * 09년 최신판례 7개, 08년 최신판례 7개 출제
 * 문제해설 : 함승한 형법올리기(총/각론) → 문제 11번 중 ㉠, 문제 13번 중 ㉢번을 제외한 100% 적중
 함승한 09년 상하반기 핵심판례 → 문제 11번 중 ㉠, 문제 13번 중 ㉢번 적중(p47, p51)

1.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'자수'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. [총론, p28, 18번]
-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. [총론, p41, 6번]
-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'정보'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,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. [각론 p180, 중간]
- ④ 형법 제207조 제3항 소정의 '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'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. [총론, p27, 8번]

<해설>

- ① ○ : 대판 1997.3.20, 96도1167, 전합
- ② × :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대수성이 요구되므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(대판 2007.4.27, 2007도694).
- ③ ○ : 대판 2002.7.12, 2002도745
- ④ ○ : 대판 2004.5.14, 2003도3487

2.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)

[총론, p73, 하단]

- ① 기수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.
- ②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.
- ③ 기수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.
- ④ 체포·감금죄(형법 제276조), 주거침입·퇴거불응죄(형법 제319조)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.

<해설>

- ② × :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.



3.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㉠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. [총론, p101, 하단]
- ㉡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. [총론, p102, 맨위]
- ㉢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,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. [총론, p101, 하단]
- ㉣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,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·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범의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범의를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. [총론, p98, 맨위]

-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

<해설>

- ㉠㉡ ○ : 대판 1996.9.6, 95도2551)
- ㉡ × : 위법성요소설에 대한 비판이다.
- ㉢ ○ : 대판 2004.6.24, 2002도995

4. 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[총론, p181]
- ②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[총론, p200]
- ③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[총론, p441]
- ④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[총론, p440]

<해설>

- ① ○ : 형법 제21조 제2항
- ② ○ : 형법 제23조 제2항
- ③ ○ : 형법 제52조 제1항
- ④ × : 형을 감경할 수 있다(형법 제53조).

5.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[총론, p260, 8번]
- ②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,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. [총론, p245, 중간]
-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 [총론, p236, 1번]



8.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[총론, p417, 6번]
 - 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[총론, p411, 24번]
 - ㉢ 배우자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간통한 경우 [총론, p409, 3번]
 - ㉣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[총론, p411, 25번]
-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

<해설>

- ㉠ × :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,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(대판 2004.6.25, 2004도1751).
- ㉡ ○ :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(대판 2006.1.27, 2005도8704).
- ㉢ ○ :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, 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(대판 1990.1.25, 89도1317).
- ㉣ ○ :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(대판 2009.4.23, 2009도834).

9.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㉠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. [총론, p431, 중간]
 - 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. [총론, p450, 맨위]
 - ㉢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,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. [총론, p459, 중간]
 - ㉣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. [총론, p468, 중간]
-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

<해설>

- ㉠ ○ : 형법 제48조 제1항의 '범인'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,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'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'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(대판 2006.11.23, 2006도5586).
- ㉡ × :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(형법 제35조 제2항).
- ㉢ × :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 집행유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,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판 2007.2.22, 2006도8555).
- ㉣ × :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(형법 제77조).



10. 다음 중 형법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㉠ 강간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에 약 2cm 정도로 굽힌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
[각론, p101, 4번]
- ㉡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[각론, p20, 하단, 2번]
- ㉢ 폭행으로 인해 보행불능, 수면장애, 식욕감퇴 된 경우 [각론, p20, 상단, 1번]
- ㉣ 8세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
[각론, p101, 8번]
- ㉤ 오랜 시간 동안의 폭행·협박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
[각론, p19, 맨위]

-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

<해설>
 ㉠ × : 대판 1987.10.26, 87도1880
 ㉡ × : 대판 2000.2.25, 99도3910
 ㉢ ○ : 대판 1969.3.11, 69도161
 ㉣ ○ : 대판 1990.4.13, 90도154
 ㉤ ○ : 대판 1996.12.10, 96도2529

11.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?

- ㉠ 찰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[09년 핵심판례, p47]
- ㉡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(16세)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. [각론, p103, 중간]
- ㉢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(18세)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. [각론, p109, 하단]
- ㉣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. [각론, p87, 중간]

- ① ㉠, ㉡ ② ㉡, ㉢, ㉣ ③ ㉠, ㉢, ㉣ ④ ㉠, ㉡, ㉢, ㉣

<해설>
 ㉠ × :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(대판 2009.10.29, 2009도5704).
 ㉡ × :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판 2001.12.24, 2001도5074).
 ㉢ × :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(18세)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, 그 촬영 부위가 「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의 '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'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(대판 2008.9.25, 2008도7007).
 ㉣ × :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,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(대판 2009.2.12, 2008도8601).



12.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. [각론, p114, 10번]
-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, 매번 한 사람에게만 의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. [각론, p114, 2번]
- ③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. [각론, p118, 중간]
- ④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. [각론, p120, 하단]

<해설>

- ① ○ : 대판 2008.2.14, 2007도8155
- ② ○ : 대판 1996.7.12, 96도1007
- ③ × :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,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(대판 2007.10.25, 2007도5077).
- ④ ○ : 대판 2008.10.23, 2008도6515

13.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- 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,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. [총론, p411, 27번, 각론 p591, 맨위]
- ②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'임·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'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. [총론, p227, 12번]
- ③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. [09년 핵심판례, p51]
- ④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. [각론, p141, 하단]

<해설>

- ① ○ : 대판 2009.6.25, 2009도3505
- ② ○ : 대판 2009.7.23, 2009도840
- ③ × :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,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.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(대판 2009.11.19, 2009도4166, 전합).
- ④ ○ : 대판 2001.11.30, 2001도2015



14.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**않는**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?

- ㉠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. [각론, p170, 3번]
- ㉡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. [각론, p167, 중간]
- ㉢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라든가,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. [각론, p171, 중간/하단]
- ㉣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·연립주택·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'사람의 주거'에 해당한다. [각론, p166, 맨위]

- ① ㉠, ㉡ ② ㉡, ㉢ ③ ㉢, ㉣ ④ ㉡, ㉣

<해설>

㉠ ○ : 대판 1997.3.28, 95도2674

㉡ × : [1]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,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(대판 2008.4.10, 2008도1464).

[2]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,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판 2005.10.7, 2005도5351).

㉢ × :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(대판 2006.9.14, 2006도2824).

㉣ ○ : 대판 2009.9.10, 2009도4335

15.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㉠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(친족간의 범행과 고소)가 준용된다. [각론, p199, 하단]
- ㉡ 아버지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실은 행위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을 때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. [각론, p202, 맨위]
- ㉢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. [각론, p202, 하단]
- ㉣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 [각론, p200, 맨위]
- 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. [각론, p202, 중간]

-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



<해설>

- ㉠ × : 재산범죄 중 강도죄, 손괴죄,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.
- ㉡ ○ : 친족관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고,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.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.
- ㉢ × :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 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,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(대판 2008.7.24, 2008도3438).
- ㉣ ○ : 대판 2000.10.13, 99오1
- ㉤ × :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,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(대판 2007.3.15, 2006도2704).

16. 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소의 제기 없는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. [각론, p266, 4번]
- ②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. [각론, p266, 1번]
-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. [총론, p301, 중간]
- ④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. [총론, p285, 21번]

<해설>

- ① × :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(대판 1982.10.26, 82도1529).
- ② × :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,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(대판 2002.6.28, 2001도1610).
- ③ × :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(대판 2005.12.8, 2005도8105).
- ④ ○ : 대판 1998.2.27, 97도2786



17.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㉠ 횡령죄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 [각론, p296, 중간]
- ㉡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다시 찾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은 장물이다. [각론, p359, 하단]
- ㉢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. [각론, p361, 맨위]
- 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,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. [총론, p397, 중간, 각론, p261, 맨위]

-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

<해설>

- ㉠ × :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(대판 2000.4.11, 2000도565).
- ㉡ ○ : 대판 2000.3.10, 98도2579
- ㉢ ○ : 대판 2004.4.16, 2004도353
- ㉣ × :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(대판 1997.6.27, 97도508).

18.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전체적인 형식·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. [각론, p439, 맨위]
- ②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. [각론, p439, 하단, 1번]
- ③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. [각론, p442, 중간]
- ④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. [총론, p338, 4번]

<해설>

- ① × :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·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(대판 2001.8.24, 2001도2832).
- ② ○ : 대판 1999.7.9, 99도857
- ③ ○ : 대판 2006.1.26, 2005도4764
- ④ ○ : 대판 1985.8.20, 83도2575



19. 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,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다. 甲의 죄책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[각론, p497, 3번]

- ① 사문서위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
- ②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
- ③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
- ④ 사문서위조죄만 성립

<해설>

- ③ ○ :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,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(facsimile)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(대판 1994.3.22, 94도 4).

20.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범이다. [총론, p76, 각론 p396]
- ②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. [총론, p158 도표, 각론 p411, 하단]
- ③ 도박개장죄는 목적범이다. [총론, p76 도표, 각론, p520]
- ④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. [총론, p72 도표, 각론, p539]

<해설>

- ① ○ : 형법 제114조
- ② ○ : 연소죄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·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·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소유일반건조물·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. 즉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.
- ③ ○ : 형법 제247조
- ④ × : 반의사불벌죄이다(형법 제110조).